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포함한다)에 약사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를 “포함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약사 면허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2조의2제1항제3호”를 “제22조의2제2호”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2(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 법 제11조의2제1항제7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대마의 취급·관리에 관하여 보고된 정보의 수집·조사·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2. 마약류의 통합정보 관리를 위한 정보화시스템(이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교육 및 그 밖에 정보화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약류의 통합정보 관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② 삭제

제47조제2항 중 “지정(교육을 이수한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다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으로 허가 또는 지정 받기 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제8조제6항”을 “제8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의2서식 및 제28호의3서식 중 “제24조제4항”을 “제24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의4서식 및 제34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의6서식 중 “제34조의2제2항”을 “제34조의2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마약류취급자([]허가 []지정)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허가: 25일 지정: 2일
[] 마약류수출입업자 [] 마약류원료사용자 [] 마약류도매업자 [] 원료물질수출입업자 [] 마약류제조업자 [] 마약류학술연구자 [] 마약류관리자 [] 원료물질제조업자				
신청인 (대표자)	업소의 명칭(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			
	업소의 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취급물질(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한함)	
마약류 관리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약사면허번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지정)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시·도지사

신청인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 3에 따른 금액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신청인 제출서류	(마약류수출입업자 허가의 경우)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법 제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로 영사관의 확인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허가의 경우)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학술연구계획서 3. 학술연구자의 자격에 관한 서류 4.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법 제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로 영사관의 확인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의 경우)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원료물질수출입업자·원료물질제조업자 허가의 경우)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취급하려는 원료물질의 종류를 적은 서류 3.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법 제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로 영사관의 확인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원료물질수출입업자·원료물질제조업자가 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따른 허가대장 또는 신고수리대장을 통한 수입품목허가(신고)증(마약류수출입업자가 되려는 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장을 통한 의약품제조업허가증(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되려는 자만 해당합니다) 4. 약사 면허증(마약류관리자가 되려는 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약사 면허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약류관리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마약류 수입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수입자)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대표자	생년월일	
	업소의 명칭		
	업소의 소재지		
위탁자	대표자		
	업소의 명칭		
	업소의 소재지		
판매자 (수출자)	대표자		
	업소의 명칭	해외거래처부호	
	업소의 소재지		
내용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원산지		
	수입예정일		
	선적항(공항)		

변경사항			
항목	승인받은 사항	변경승인 신청사항	사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마약류 수입승인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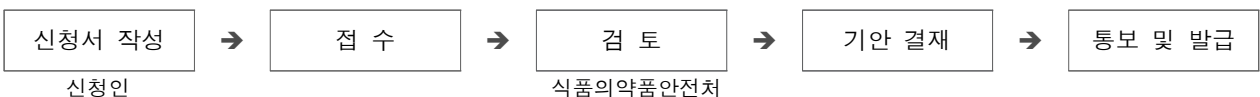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첨부서류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거래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지정의 신청) ①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u>약사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u>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u><신 설></u></p>	<p>제10조(지정의 신청) ①----- ----- ----- ----- ----- <u>포함한다)를</u> ----- ----- -----.</p> <p><u>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약사면허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u></p>
<p>제2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등)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마약류취급승인자(법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법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라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수출입·제조·판매·양</p>	<p>제2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등) ① ----- ----- ----- ----- ----- ----- -----</p>

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운영·관리·교육 및 그 밖에 정보화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통합정보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사용을 위한 외부 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 및 결과 공개

6. 그 밖에 마약류의 통합정보 관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외부 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 수출입업자등의 교육) ① (생략)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은 1회 2시간으로 하되, 그 교육을 받을 시기는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마

항

3. 그 밖에 마약류의 통합정보 관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② 삭제

제47조(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 수출입업자등의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으로 허가 또는 지정(교육을 이수한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다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은 후 1년 이내로 한다.

<단서 신설>

③ ~ ⑧ (생략)

----- 지정-----

다만,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으로 허가 또는 지정 받기 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⑧ (현행과 같음)